보 도 설 명 자 료
('16. 3. 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"시장점유율 75% 제한에 원샷법 제기능 못한다"
('16. 3. 3. 한국경제)

1. 기사내용

□ 「공정거래법」상 기업결합심사시 **시장점유율 제한** 등을 풀지 않으면 「**기업활력법**」 **실효성이 낮아질 것**이라는 지적

○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으로 **시장점유율 합계가 75% 이상** 되더라도 국민경제적 효율성을 위하여 특례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해야 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내용

1 「공정거래법」상의 기업결합 심사기준

○ (**경쟁제한성 평가**) 기업결합으로 인해 **경쟁제한성**이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**기업결합 금지** (공정거래법 제7조제4항)

- ① **시장지배적사업자***, ② **시장점유율 1위**, ③ **1·2위 회사간 시장점유율이 25%p이상 차이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** 추정

* ①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% 이상이거나 ②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%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(공정거래법 제4조)

○ (**기업결합제한 예외**) **경쟁제한성이 있어도** 기업결합에 따른 **효율성 증대효과***가 **경쟁제한 폐해보다 크면 허용** (공정거래법 제7조제2항)

* ① 비용절감, 수출확대 등 생산·판매·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② 고용·지역경제·연관산업 등 국민경제적 효율성 증대효과 고려

2 현행 「기업활력법」상 기업결합심사 특례규정

○ 사업재편에 따른 기업결합심사시 주무부처의 장은 **공정위에 의견 전달이 가능**(제10조제7항)하고, 사업재편 승인신청시 **기업결합심사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**하여 **별도 신청도 불필요** (제9조제5항)

- 아울러 **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**에도 **공정위 1급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**하도록 규정 (제6조제5항)

○ 따라서, **시장점유율 합계 75%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**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효율성 판단시 **현행 「기업활력법」 특례를 활용하여 주무부처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**

MOTIE
ISTRY OF
DE, INDUSTRY & ENERGY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허정수 팀장 (044-203-4830)
문경준 사무관(044-203-4833)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3-03 16:41:15